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
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국방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전·평시 지원항공작전기지로 유지 필요성이 없어진 기지명 G-113 항공작전기지의 종류를 지원항공작전기지에서 헬기전용작전기지로 변경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 제2호라목을 삭제하고, 같은 표 제3호에 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터. G-113 경기도 고양시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[별표2]항공작전기지의 종류별 위치(제6조 관련)	[별표2]항공작전기지의 종류별 위치(제6조 관련)
1. 전술항공작전기지 가.~너. (생략)	1. 전술항공작전기지 가.~너. (현행과 같음)
2. 지원항공작전기지 가.~다. (생략) <u>라. G-113 경기도 고양시</u> 마.~타. (생략)	2. 지원항공작전기지 가.~다. (현행과 같음) <u>라. <삭제></u> 마.~타. (현행과 같음)
3. 헬기전용작전기지 가.~커. (생략) <u><신설></u>	3. 헬기전용작전기지 가.~커. (현행과 같음) <u>터. G-113 경기도 고양시</u>
4. 예비항공작전기지 가.~다. (생략)	4. 예비항공작전기지 가.~다.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방부 시설기획과	
연 락 처	(02) 748 - 5845